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10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1
2.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해외사례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 2 –

현행	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1)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2)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3)되고,

1) 교육환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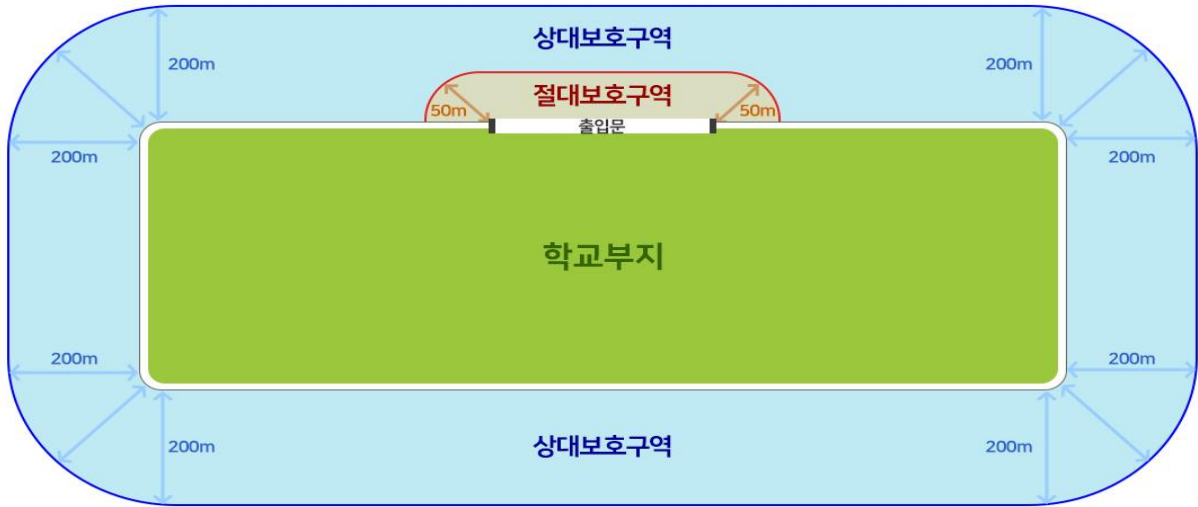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참고자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3)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이 있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에는 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이 있음(교육환경법 제9

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 를 위하여 모든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근 본적으로 금지 (제9조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 터 제31호까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 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 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부터 제32호까지)

특히 담배와 관련하여, 교육환경법은 담배 자동판매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⁶⁾으로 정의되며, 「담배사업

5)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6)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법」상 담배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교육환경법에서는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이로 인해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고, 자동판매기 또는 무인판매점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어 전자담배 구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전자담배 판매소 840개소 중 29개소의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법에서 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대적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의 범위를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7) 현재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 판매는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정확한 운영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웹 검색을 통해 “전자담배”로 확인된 업소명, 주소지를 토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분석한 것으로 실제 운영하는 곳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세계보건기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밝히며, 니코틴 함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액상형 및 껌련형 전자담배와 관련 기기 장치류를 기존 담배와 같이 규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종담배는 니코틴을 비롯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에 포함된 용매나 향료 등이 갖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함⁸⁾.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⁹⁾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교육환경과 공중보

8) 자료: 질병관리청, 「신종담배의 건강영향 - 액상형 및 껌련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24.7.

9)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합동, 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함.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담배 자동판매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는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운영 중이고,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는 그 설치·운영이 위법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영업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이해됨¹⁰⁾.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유치원 재원 아동의 건강권 또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처음 흡연을 경험한 평균 연령은 13.2세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유치원 재원 아동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10) 과거 교육환경법 개정으로 카지노업, 중독자재활시설, 레미콘 제조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에 대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지정할 당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한 바 있음.

참고로, 현행 교육환경법은 대부분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유치원, 대학까지 포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제외 >

조문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¹¹⁾	○	△	△	○
20호	게임물 시설 ¹²⁾	△	△	△	○
21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24호	노래연습장업	○	△	△	○
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	○

※ △(심의)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가능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둘째,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해당 법률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환경법상 담배의 개념에도 자연스럽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대표적으로 PC방 등

12) 미니게임기, 오락기 등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현황 >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22017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2024.7.15.
22024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2024.8.1.
22025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2024.8.5.
22028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2024.8.16.
22028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2024.8.16.
22046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	2024.10.10.
22050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	2024.10.30.
22050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2024.10.30.
22051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2024.10.31.
22055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2024.11.13.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자판기도 설치·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나,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소관위(기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법률 체계 상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이후 교육환경법에 해당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이 처음 흡연 경험을 하는 연령대는 '24년 기준 만 13.2세로 유치원생이 담배를 접할 가능성이 낮는데 규제를 강화해 영업권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 시 「교육환경법」 개정은 실익이 없음.
○ 서울시교육청: 이견없음 - 「담배사업법」 개정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나, 관련 법률 개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184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참고자료 2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해외사례

□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하여 규제 중

*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정의: 미국, 칠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

담배제품과 별도로 전자담배를 정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9개국

※ (미국 담배제품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 (Food, Drug, and Cosmetic Act, '23.4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및 과세 현황(보건복지부, 24.8월) >

연 번	담배협회 조사			복지부 확인 결과			
	국가명	규 제	과 세	규 제	정 의 기 준		과 세
					담배제품 ¹⁾	전자담배 ²⁾	
1~3	콜롬비아, 일본, 한국	X	X	X			X
4~5	멕시코, 튀르키예	X	X	O (전자담배 판매 금지)			X
6	미국	O	각주마다 상이	O	O		각주마다 상이
7	칠레	O	X	O	O		X
8	아이슬란드	O	X	O	O		X
9	아일랜드	O	X	O	O		X
10	이스라엘	O	O	O	O		O
11	코스타리카	X	O	O		O	O
12	벨기에	O	O	O		O	O
13	캐나다	O	O	O		O	O
14	체코	O	O	O		O	O
15	덴마크	O	O	O		O	O
16	에스토니아	O	O	O		O	O
17	핀란드	O	O	O		O	O
18	독일	O	O	O		O	O
19	그리스	O	O	O		O	O
20	헝가리	O	O	O		O	O
21	이탈리아	O	O	O		O	O
22	라트비아	O	O	O		O	O
23	리투아니아	O	O	O		O	O
24	노르웨이	O	O	O		O	O
25	폴란드	O	O	O		O	O
26	포르투갈	O	O	O		O	O
27	슬로바니아	O	O	O		O	O
28	스웨덴	O	O	O		O	O
29	프랑스	O	X	O		O	X
30	룩셈부르크	O	X	O		O	X
31	네덜란드	O	X	O		O	X
32	뉴질랜드	O	X	O		O	X
33	슬로바키아	O	X	O		O	X
34	호주	O	X	O		O	X
35	오스트리아	O	X	O		O	X
36	스위스	O	X	O		O	X
37	영국	O	X	O		O	X

* 1)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의 정의 내에 전자담배를 포함

2) 별도의 법령 또는 조항을 통해 Vaping Products,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등으로 정의